

분류기호	차수 30072	기 안 용 지	0
문서번호	~ 8147	전화: 362~3811	처 행 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 · 준영구 10. 5. 3. 1.	지 장	국 장
수신처 보존기간	준 영 구	<i>6/6/88</i>	
시행일자	1988. 9. 16.		
보 조 기 관	차수과장 천경 용지과장 김준	협 조 기 관	문 서 통 제 1988. 9. 16 동계판
기안책임자	김 영 춘 9/16	발 송 인 <i>9.10.11.12.13.14.15.16.17.18.19. 1988. 9. 16 서울특별시</i>	
경 우 수 신 참 조	주 전처 참조	발 신 명 의	서울특별시장
제 목	하천의 접용 (한강축제구래설치) 승인 1. 문화재(100-545 (1988. 8. 26.) 호 및 땅지 30072- 1711 (1988. 7. 22.) 호 외 관련문서, 2. 흙호로 제출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8-1번지선(한 강) 하천의 접용 (한강축제구래설치) 승인신청에 대하여 결정 과 같이 승인되었으나 이에 따른 절차조치를 취하고 승인사항 및 조건사항과 차천관리에 만족을 기하기 바람.		
첨 부: 승인증서(서명)부 끝			

주신자 ; 한강관리사업소장(양재우) 10/76  
문화감정관.

0088

88

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

총괄 30072- 424 ( 755-1502 )

1988. 9. 10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제목 하천의점용(한강축 제무 대설치) 승인

1. 치수 30072-1800 (88. 8. 27) 의 관련입니다.

2. 규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-1번지선(한강)  
하천의점용(한강축 제무 대설치) 승인 신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 하오니 승  
인사항 및 조건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승인증서 1부.



선 결	치수과장	斗	결재	용지제작	李
접수일시 3)	1988. 9. 14 6. 15	민 15. 15	(공급)	회수제작	李
처리과	1988. 9. 15!	22. 3	답	수령제작	

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



0089

# 하 천 점 용 승 인 증 치

( 가설 공작물 설치 )

승 인 번 호 서울 제 279호

회 승 인 자

주 소 : 서울특별시장  
성 명

하 천 명 : 한 광

점 용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의도동 85-1번지

점 용 목 치 : 서울올림픽 및 장애자 올림픽 문화예술축제무대

점 용 면적 : 1,618.87 m<sup>2</sup>

유수인용(주수)량 : -

공 작 물 내 역 :

- 가설사무실 1개소
- 가설무대설치
  - 기초파일 40분
  - 본 무대 1개소
  - 보조무대 2개소

점 용 기 간 : 88. 12. 31까지

조 건 : 별 첨

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

1988년 9월 2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

0090

## 제 1 조 전

1. 승인사항 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.
2. 본 승인을 통하여온 자료로 다른 데에 저작되는 사람으로 한 재판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야함.
3. 본 공사시행 및 짐용으로 인하여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비승인자가 전담 책임해결 및 보상하여야 함.
4. 본 공사시행 및 짐용으로 인하여 하천, 하천부속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동에 차량을 조례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장 차장이 있는 행위나 하천에 오염 및 오염위생상 위해로 행위는 일체 일금함.
5. 공익 또는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비승인자가 관계법령 또는 승인관청의 제한지시사항 및 승인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조건에는 비승인자 부담으로 본 공작물을 건설하고 해친금 원상복구해야 야함.
6. 승인기간만료 또는 짐용을 폐지할 때에는 하천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이행경과에 대하여 당장의 확인을 받은 후 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.
7. 본 공사는 당장 감독관의 감독하에 시행해야 하고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착공 즉시 착공체를 제출해야 야함.
8. 본 공사의 준공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  
준공 즉시 당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.
9. 각시설물에 대하여는 홍수시 즉시 철거하여 하천밖(장외)으로 반출 해야 야함.

10. 본 시설물은 가설공작물로서 임시시설물임을 감안88.10.31까지  
하고 88.12.31까지 완전 철거하여 운상복구 하여야 하며, 그 이  
과를 증명서류(사진등)을 첨부 제출하여 당첨의 확인감사를 관  
함.



0092

92